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57
----------	-------

발의연월일 : 2026. 6. 10.

발 의 자 : 박홍배 · 이정현 · 박정현  
민병덕 · 안도걸 · 김우영  
이수진 · 김영호 · 김문수  
박해철 · 김남근 · 한준호  
김영환 · 오세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시장 탐색을 위한 자발적 실업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별 생애 1회에 한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호가목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직 당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에 해당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직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